

의안번호	제630호
의결연월일	2014년 월 일 (제328회)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4년 3월 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630호
------------	-------

제출연월일 : 2014년 3월 4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정기국제노선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중임
- 현 조례는 항공사의 결손금 발생시에만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결손을 전제로 노선을 개설하는 항공사가 없는 등 최근의 항공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사실상 정기노선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국제항공노선 다변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충청권 4개 시·도간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 지원범위 현실화(안 제3조)
 - 현 조례는 정기국제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관련사항을 삭제,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에 탄력적으로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조정
- 신규개설 항공노선의 결손금 지원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 신규개설 항공노선의 지원범위 조정에 따른 결손금 관련 규정의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구 명확화(안 제8조 등)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6. 비용추계서 : 붙 임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항공사업자”로 한다.

제2조 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항공법」 제2조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제1호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결정) 제3조의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제8조 중 “기타 부정한 방법”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주의 의무”를 “사업자 의무”로,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를 “내용 또는 조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라 함은 <u>『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제1호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u></p> <p>제3조(<u>지원 대상</u>)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중 일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조(목적) <u>『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u> <u>항공사업자</u> </p> <p>제2조(정의) <u>『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u>『항공법』 제2조에 따른</u> <u>『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른</u></p> <p>제3조(<u>지원 범위</u>)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규모 등) ① 재정지원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율 및 화물량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 결정) 제3조의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7.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p>제6조(지원 신청)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지원금 교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한다.</u></p> <p><u>② 제5조 규정에 의한 도비지원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준한다.</u></p>	<p><u>제7조(지원금 교부)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u></p>
<p><u>제8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u></p>	<p><u>제8조(지원금의 반환)</u> <u>부정한 방법</u></p>
<p><u>제9조(주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u></p>	<p><u>제9조(사업자 의무)</u> <u>내용 또는 조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u>.....</p>
<p><u>제11조(준용) 기타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u></p>	<p><u>제11조(준용) 그 밖에</u> <u>『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u></p>
<p><u>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신청인</td> <td>대표자</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항공사명</td> <td></td> <td>사업자번호</td> <td></td> </tr> <tr> <td>소재지</td> <td colspan="3">(☎)</td> </tr> <tr> <td>신청금액</td> <td colspan="4">일금 (₩)</td> </tr> <tr> <td><u>산출내역</u></td> <td colspan="4"></td> </tr> <tr> <td>운항노선</td> <td colspan="4"></td> </tr> <tr> <td><u>여객운임</u></td> <td colspan="2"></td> <td>운항기종 및 좌석수</td> <td></td> </tr> <tr> <td>운항기간</td> <td colspan="2"></td> <td>운항회 수</td> <td></td> </tr> <tr> <td rowspan="2">탑승현황</td> <td>공급좌석 수</td> <td colspan="3"></td> </tr> <tr> <td>탑승객수</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5"> <u>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u> <u>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u> </td> <td colspan="5"> <u>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u> <u>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u> </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u>소속</u> 성명 (인)</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u><삭제></u> 성명 (인)</td> </tr> <tr> <td>거래</td> <td>예금주</td> <td></td> <td>계좌번호</td> <td></td> <td>거래</td> <td>예금주</td> <td></td> <td>계좌번호</td> <td></td> </tr> <tr> <td colspan="5"> 첨부서류 1.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7.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td> <td colspan="5"> 첨부서류 <u><삭제></u> <u><삭제></u> 1.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2.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3. 운항 사실 기록부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td> </tr> </tbody> </table>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항공사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			신청금액	일금 (₩)				<u>산출내역</u>					운항노선					<u>여객운임</u>			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기간			운항회 수		탑승현황	공급좌석 수				탑승객수				<u>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u> <u>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u>					<u>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u> <u>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u>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u>소속</u> 성명 (인)					신청인(대표자) <u><삭제></u> 성명 (인)					거래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7.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첨부서류 <u><삭제></u> <u><삭제></u> 1.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2.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3. 운항 사실 기록부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항공사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																																																																																																								
신청금액	일금 (₩)																																																																																																									
<u>산출내역</u>																																																																																																										
운항노선																																																																																																										
<u>여객운임</u>			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기간			운항회 수																																																																																																							
탑승현황	공급좌석 수																																																																																																									
	탑승객수																																																																																																									
<u>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u> <u>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u>					<u>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u> <u>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u>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u>소속</u> 성명 (인)					신청인(대표자) <u><삭제></u> 성명 (인)																																																																																																					
거래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7.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첨부서류 <u><삭제></u> <u><삭제></u> 1.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2.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3. 운항 사실 기록부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관련 법령 발췌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 (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①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가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2.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
3.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항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2.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33.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법 제2조제32호 및 제3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화물만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한 항공기는 제외한다)
2.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제15조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법 제2조제32호나목 및 제33호나목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점간운항: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2. 관광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
3. 전세운송: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조례개정 이유

항공사의 결손시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신규 국제정기 노선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항공사 재정지원>

- ◇ 지원목적 : 신규국제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지원으로 국제노선 확충 및 공항 활성화 기여
- ◇ 지원대상 : 6개월, 주2회 이상 국제항공노선 신규 개설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 ◇ 지원내용 : 신규 국제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의 일부
- ◇ 지원근거 :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 ◇ 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2. 비용발생 요인

-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액요인 없음

3. 관련조문 : 해당없음

4. 비용 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 나. 추계 결과 : 2014년 예산 기획보 되어 추가비용 발생 사유 없음
- 다.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6. 작성자 : 관광항공과장 임 택 수